「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년 4월 25일, 평창군수 제출

○ 회부일자: 2025년 4월 28일 회부

○ 상정일자: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5년 5월 7일 상정・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안전교통과장)

가. 제안이유

❍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규정 신설 등으로 교통 편익을 제공하며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항목 신설(제3조제2항)

❍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조정 규정 신설(별표 1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·····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「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토보고서 1부.

2. 「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「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❍ 제 안 자 : 평창군수
- ❍ 제안일자 : 2025. 4. 25.
- ❍ 회부일자 : 2025. 4. 28.
- ❍ 상정일자 : 2024. 5. 7.

2. 제안이유

- ❍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규정 신설 등으로 교통 편익을 제공하며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❍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항목 신설(제3조제2항)
- ❍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조정 규정 신설(별표 1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❍ 「주차장법」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 방법을, 제15조에서 노외주차장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❍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에서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❍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하여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성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❍ 안 **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**에서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최초 30분까지 주차요금의 면제를 규정하고,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[별표1]의 요금을 따르도록 규정함.

❍ [별표 1]에서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.

5. 종합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과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관계 법령

□ 주차장법

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(이하 “노외주차장관리자”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

③ (생 략)

제15조(관리방법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(생 략)

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제19조(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(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)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「주차장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15

제출년월일 : 2025. 4. 25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규정 신설 등으로 교통 편익을 제공하며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항목 신설(제3조제2항)

나.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조정 규정 신설(별표 1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경제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25. 3. 26. ~ 2025. 4. 1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평창군 공고 제2025-475호, 안전교통과-29749(2025. 3. 26.)호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4936(2025. 3. 28.)호]

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4936(2025. 3. 28.)호]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12366(2025. 3. 31.)호]

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6067(2025. 4. 16.)호]

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 [기획예산과-6249(2025. 4. 18.)호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감하여”를 “감면하여”로 하고,
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최초부터 3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, 30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요금표에 따른다.

별표 1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(생 략)	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(현행과 같음)
②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.	②---------- 감면하여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최초부터 3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, 30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요금표에 따른다.
③·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[별표 1]	[별표 1]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비고	비고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제19조(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(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)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「주차장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◦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◦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◦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- 감면규정 신설에 따른 순세입의 감소 = 방문객 수 × 주차요금(30분)
  · 방문객 수: 월 1,600명(2025. 1. 기준) * 매년 10% 증가 가정
  · 주차요금: 700원(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, 1급지·대형차 기준)
- (2025년) 1,600명 × 12개월 × 700원 ═ 13,440천원

<비용추계 결과>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
방문객 수(명)	19,200	21,120	23,232	25,555	28,110
주차요금(원)	700	700	700	700	700
합계(원)	13,440,000	14,748,000	16,262,400	17,888,500	19,677,000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장 어 성 용
연락처	(033) 330 - 2019